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4.9.3.(화) 조간	배포	2024.9.2.(월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팀 장	최승록	(02-3145-8129)
	불법사금융대응1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규현	(02-3145-8121)
담당부서	대한변호사협회	책임자	팀 장	황승환	(02-2087-7830)
	정책팀	담당자	대 리	강창희	(02-2087-7831)

#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!

■ 소비자경보 2024-30호			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			
대상	금융	소비자	일반			

# 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**솔루션업체**가 난립하여 **불법사채**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**피해자**에게 **수수료**를 **요구**하는 **사례**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- **솔루션업체**는 **인터넷 광고**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**유인**하고,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**금전**(수수료 등)을 요구한 후, 사채업자와의 **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** 등 **소비자들**의 **피해**가 **우려**됩니다.
  -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\* 위반 소지가 높으며,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제109조(벌칙) 제1호 :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,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
- 또한,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### 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용하지 마세요!
-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용하지 마시고,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)에 적극 신고하세요!
- ③ 고금리,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!

# I. 주요특징 및 피해사례

# 1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관련

### 인터넷 광고,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

- □ **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**시 상단에 노출되는 **유료광고**를 이용하거나 **블로그 광고**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**홈페이지**로 **유인**합니다.
- □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\*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 하거나,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,
  - \* 금감원, 법무부, 검찰, 대한변호사협회 등
  - **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**되고 있다는 것을 **홈페이지**에서 제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.

###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, 착수금을 요구

- □ **솔루션업체**는 보통 **10~30만원** 정도의 **금전**을 수수료, 착수금,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**요구**하는데,
  - 피해자들은 **본인**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합니다.

#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

□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,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여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###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

□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**조율이 성사**되었다는 이유로 **추가적인**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, 납부하지 않는 경우 **납부**를 **독촉**하기도 합니다.

#### (피해사례) 불법사채 채무정리를 빌미로 수수료 요구

●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〕●●●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

인터넷 광고로 <u>피해자 유인</u>

○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서는 **사채업자**에게 **연락**하여 **연장약속**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**피해자**에게 **수수료 30만원을 요구** 

채무정리이유로수수료요구

 피해자는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낼 수 없다고 하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,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 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

<u>수수료 독촉</u> 및 지인 추심

○ 이후 연락을 회피하자 **피해자**뿐만 아니라 **피해자의 배우자** 에게도 **전화**하거나 **카톡**을 보내 수수료 요구

# 2 |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

###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인

□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,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합니다.

###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

- □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.
  - **수수료를 입금**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**대출**을 **받지 못하고**, **수수료 피해**만 입게 됩니다.

#### (피해사례)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편취한 사례

- 피해자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 연락을 하였으며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
- 해당 업자는 **대출금액 20%**인 **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**하여야 **대출이 가능**하다고 하여, 급한 나머지 **60만원을 먼저 입금**
- **수수료 입금 후 대출 실행여부**를 **문의**하였으나, 해당 업자는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한 이후 **연락이 두절**

<u>대출을 명목</u>으로 <u>수수료 요구</u>

<u>수수료 편취</u> 후 잠적

ш	人川	TL	on	I LZ	51 0	І ГЦ	00	) 려
II.	소비	시	πIJ	715	ゔ゙ヺ	६ पा	ᇊ	Ĺ

- □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례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한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.
  - **소비자분들**께서도 다음의 **대응요령을 참고**하여 **유의**해 주셔야 **피해**를 **예방**할 수 있습니다.

#### **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용하지 마세요!**

- □ **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**해준다는 명목으로 **수수료를** 받아가지만, 결국 **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**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- 또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(변호사법 제109조, 제112조) 소지\*가 높습니다.
    - \*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,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
  - 따라서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(☎112)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(☎1332) 또는 대한 변호사협회(☎02-3476-4000)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용하지 마시고,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)에 적극 신고하세요!
- □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(대부업법 제11조의2)되어 있으며, 착수금,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.

- □ 불법대출중개수수료, 고금리(연 20% 초과),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, 통화·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
  - 경찰(☎112)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번)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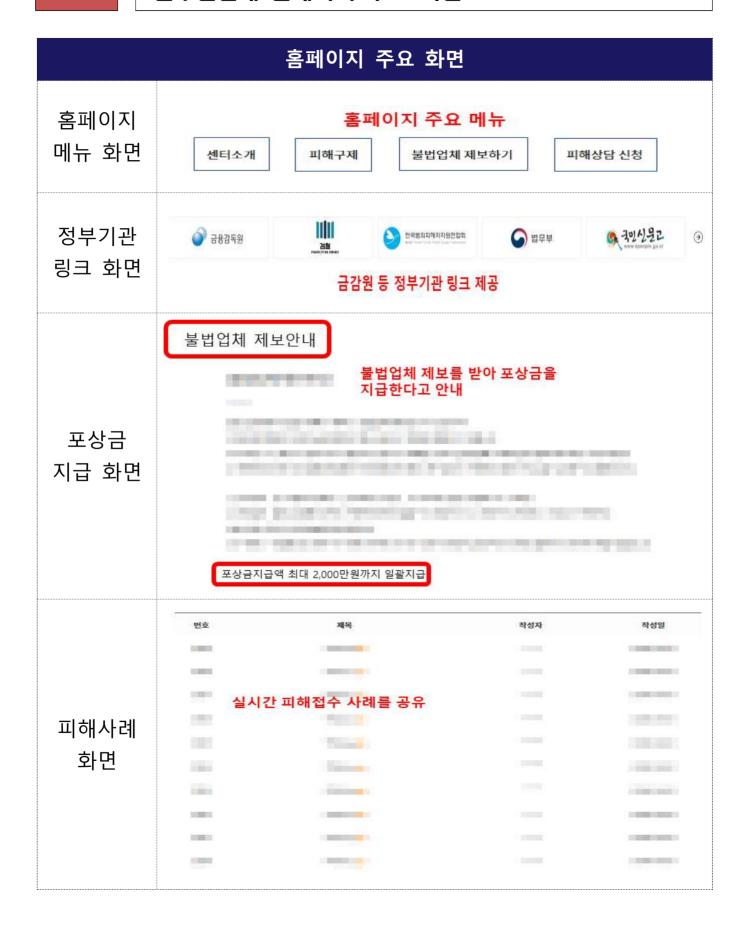
# ❸ 고금리,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!

- □ 고금리, 불법채권추심 피해(우려)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\*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- \*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
  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(☎1332→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(☎132)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<sup>☞</sup>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1

# 솔루션업체 홈페이지 주요 화면



# 붙임2

# 불법사금융 제보 신고 방법

- 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에서 제보·신고 가능
- 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  - 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- ② (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·신고
- ③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



#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

#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🔍

####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!

-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, www.kinfa.or.kr)에서 소액생계비대출·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!

#### 전 문자,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!

- "당일대출", "누구나 대출"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.

####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
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

####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!

-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,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(霽1332→3번)으로 신고하세요!
- \* (지자체 등록 대부업체) 해당 지자체, (금융위 등록 대부업체) 금감원

####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%입니다!

- 법정 최고금리인 연20%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!

- 대출·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#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

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,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
### 03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·보관하세요!

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.

# 🕦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!

- 계약서, 입·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·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.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(☎1332→3번) 또는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세요!

### 10 피해 발생 시,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!

- 최고금리 위반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를 당한 경우,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',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.
- \* 금감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(☎132)를 통해 신청